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2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윤호중·홍기원·김한규

정성호 • 이병진 • 강선우

박희승 · 강득구 · 이학영

한민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근무장소에서 원거리에 있는 근무장소 또는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인 불리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육아휴직 이후의 근무장소·근무지역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하여,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등).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전단 중 "직무"를 "직무이면서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제4호 중 "제19조제1항·제4항"을 "제19조제1항"으로,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 키지 아니하거나,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 역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육아휴직) ① ~ ③ (생	제19조(육아휴직)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4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u>직무</u> 에 복귀시켜야 한다.	<u>직무이면서 휴직 전과 같</u>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u>무지역</u>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3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	4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9조제1항·제4항</u> 을 위반	4. <u>제19조제1항</u>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 <u>아니한</u>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u>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u> <u>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u> 경 우

<신 설>

5. • 6. (생략)

4의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 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하거 나,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 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6. (현행과 같음)